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920
----------	-----

2009년 6월 26일
도시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6월 11일, 이상용 의원외 9인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16일
- 다. 상정 및 의결 일자
 -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(2009. 6. 26 상정 ·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이상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제척 · 회피 및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를 명시함(안 제8조의1).
-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 함(안 제8조의2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기타사항 : 없음.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: 김종식)

-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 및 회피, 해촉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.
 - 현행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주민 재산권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항을 규정한 안 제8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심의·자문 용역 수행자와 위원의 친족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,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범위 설정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삭제 또는 수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특이사항 없음

6. 토론요지 : 특이사항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: 별첨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

8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20
------------	-----

제안일자 : 2008년 6월 26일
제안자 :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위원과 친족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부분과 일부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8조의1 및 제8조의2를 각각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함.
-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항을 규정한 안 제8조의1 제1항 각호를 제외한 본문을 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심의·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
- 안 제8조의1 제1항 제1호 본문 중 ‘용역·감정·수용·자문 및 연구 등’을 ‘용역·자문 및 연구 등’으로 하며,
- 안 제8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심의·자문 용역 수행자와 위원의 친족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, 일부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, 안 제8조의1 제1항 제3호를 같은 항 제2호로 수정함.

수정안 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8조의1</u>(위원의 제격 및 회피) <u>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·자문에서 제격된다.</u></p> <p>1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<u>용역·감정·수용·자문 및 연구 등을</u>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</p> <p>2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</p> <p>3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</p> <p>4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(대리관계 포함)</p>	<p><u>제8조의2</u>(위원의 제격 및 회피) <u>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·자문에서 제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</u> ----- <u>용역·자문 및 연구 등</u> --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2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8조의3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</u> (생략)	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·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 2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,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1.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,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8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·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. 위원이 해당 심의·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<p>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,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</p>
<u><신 설></u>	<p>제8조의3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, 6 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